영등포구의회 제201회 제1차 정례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討報告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7. 6. 21.

社會建設委員會專門委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討報告書

#### 1. 경 과

의안 제239호로 2017년 6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고 상위법의 법명이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와 불일치한 조항을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보훈예우수당 지급 규정 신설(안 제10조)
- 나.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의 구체화(안 제11조제2항)
- 다. 별지 서식 신설 등(안 별지 제1호, 안 별지 제2호)
  - 보훈예우수당 신청서 등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4.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국가보훈 기본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입법예고 (2017. 5. 11. ~ 2017. 5. 31.)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예우수당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그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임.

#### O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조문내용 일부를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였고
-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현 조례와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 안 제10조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 안 제10조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에 대한 신설 조항과 관련하여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보훈의식 고취를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우리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부칙에서 보훈예우수당 시행일을 2018년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한 부분은 조례의 효력을 발하는 시기에 관한 규정이므로 그 시기에 관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